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차별행위 시정을 위해 제기된 소송비용의 특례 신설〉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1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간의 관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¹⁾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제1항²⁾에서는 소송을 대

1)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리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도 일정 범위 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남소 방지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원칙으로 기능해 왔으나,

공익소송(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 소송, 환경보호소송 등)이나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패소 시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우려가 크므로,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³⁾⁴⁾

-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⁵⁾에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함께 법원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법률구조제도 중 하나인 민사상 소송구조 제도는 그 요건이 「민사소송법」 제128조⁶⁾에 따라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등으로 규정되어

3)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 2. 10.),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보도자료].

4) 대한변호사협회(2022. 9. 16.). 국회와 정부는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성명서].

5)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어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⁷⁾

- 한편, 최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조항)는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기존 소송비용 상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같은 법 제109조(변호사보수산입 조항)의 경우는 공익소송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하는 것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⁸⁾

- 개정안은 현행법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소송 경위 및 패소 사유, 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소송의 위축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7) 박미정, 이학구, 서용성, & 김성화. (2022).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2(19), 1-278.

8)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2헌바159 결정

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소송 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법률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 장벽 없이 이용 가능한 정당한 상환제도를 보장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⁹⁾

□ 다만, 개정안은 소송비용 특례의 적용 대상을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차별 피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 외의 자가 제기한 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이 피해 당사자 외의 자에게 별도의 소 제기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비용 특례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와 소송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피해자 외의 사람이나 단체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이후의 불복소송, 손해

9)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배상청구, 법원의 임시조치 및 구제조치 등 소송상 구제절차는 피해자 또는 관계 당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법원의 구제 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또한, 개정안은 소송비용의 특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제기된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소송 제기 여부와 방어 방법 등을 정해 왔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사건에 소송비용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10) 이와 관련, 피해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박우경, (2025).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99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적용 대상, 지원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안 제48조의2 신설)	최보윤의원안	개정안
① 적용 대상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
② 소송비용 지원 방식	-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법원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세부 기준	지원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등 고려
④ 부칙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사법권 접근성 및 재판청구권 확대 등 차별구제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부담을 완화하여 차별행위에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이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차별을 받은 자가 제기한 소송’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등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도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남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송비용 특례의 세부 운용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의 보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